

교직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과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속병원의 직원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수의 분류) 보수는 본봉·연구비·보직수당·직급수당·직책수당·기타연구비·상여금·정근수당·연구보조비·특별연구비·교육훈련비·체력단련비·통합수당·효행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임상수당·임상학술연구비·강의료·성과급·기타수당 등으로 분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과 연구비”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호봉표에 표시된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 이외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직수당”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보직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4. “직급수당”이라 함은 본교 직원인사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급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5. “직책수당”이라 함은 기술분야 등 특정직책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6. “기타연구비”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기본급여 외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상여금과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특별연구비, 교육훈련비, 체력단련비”라 함은 교원의 교수 및 연구, 직원의 사무능력제고, 복지후생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10. “통합수당”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양비·가족수당·가계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비를 통합한 수당을 말한다.
11. “효행수당”이라 함은 직원에게 효행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2. 삭제
13.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 함은 교직원의 취학전 및 취학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14. “임상수당”이라 함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격수당을 말한다.
15. “임상학술연구비”라 함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부속병원 또는 본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임상학술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6. “강의료”라 함은 초과강의료 및 강사료 등을 말한다.
17. “성과급”이라 함은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고과평가 혹은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8. “기타수당”이라 함은 제3호부터 제17호에서 정한 외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9. “봉급”이라 함은 교원의 경우 본봉과 연구비 및 보직수당의 합산액을, 직원의 경우 본봉과 보직수당, 직급수당 및 직책수당의 합산액을 말한다.
20.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 또는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의2(기타수당) 제4조제18호에 따른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개발비”란 중·대형 온라인 강의, MOOC 강의 등 콘텐츠 개발·운영에 참여한 교강사에게 강의교안 자료 제공,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강의운영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국제어강의 강의지원금”이란 국제어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교수업적평가 인센티브”란 교수 업적평가 영역별 성과 우수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수당”이란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최우수 교수 지원 인센티브”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최우수 교원(HCR 석좌교수, 특훈교수, SKKU-Fellowship교수)에 대하여 수여하는 특별연구지원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 “특별계약 성과 인센티브”란 별도 계약에 의거한 성과 달성시 교원에게 지급하는 약정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 “특별연구비”란 특정 분야의 우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학문단위에서 추천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8. “교원채용 연구실적심사비”란 채용과정 중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내/외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 “특별 정착지원금”이란 최우수 교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0. “외국인전임교원 정착지원금”이란 외국인전임교원의 안정적 국내환경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거지원비, 항공료 지원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1. “교육활동지원비”란 일정학점 이상의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2. “교안개발비”란 강의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교원의 교안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3. “입시수당”이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입학 전형으로 실시되는 각종 시험에 출제위원, 감독위원, 진행위원, 평가위원, 공정관리위원 등으로 참여한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4. “감독수당”이란 학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중간고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등)에 감독으로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5. “포상수당”이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학내 다양한 표창(건학기념표창, 성균가족상, 장기근속표창, 수시표창 등)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기념품 포함)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6. “월정야근수당”이란 특수대학원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일정기간 업무시간이 조정되는 근무자에게 호봉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7. “교통비”란 비전임교원 등이 본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강의할 경우 이동 지원을 위해 호봉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8. “행사 기념품”이란 한마음대회 등 거교적인 행사를 통해 지급하는 수당(기념품)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9. “보직자유류비”란 교무위원, 부장 직급 이상 사무직원 등의 이동 지원을 위해 호봉표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0. “경조사비”란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축의·조의금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1. “논문게재인센티브”란 교원에게 연구 논문 게재 우수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2. “저역서게재인센티브”란 교원에게 저역서 우수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3. “공개강좌 수당”이란 공개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강의료, 코디네이터 수당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4. “동원 수당”이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학내 타 기관, 타 부서의 업무, 행사 등에 동원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5. “법정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6. “TF/위원회수당”이란 대내/외 평가, 외부 사업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한시과업조직(TF), 위원회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7. “단체협약 수당”이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8. “의료지원 수당”이란 우리대학 구성원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병원(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과의 협약에 기초하여 대학(건강센터)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9. “의과대학 시신기증활동수당”이란 의과대학의 의학발전용 시신기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0. “명예총장수당”이란 총장 퇴임 후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1. “발명자 보상금”, “기여자 보상금”, “산업자문 보상금”이라 함은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 ①봉급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호봉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상여금과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특별연구비, 교육훈련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총액을 월정액(1/12)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통합수당, 효행수당, 임상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호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기타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임상학술연구비는 각 병원별로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강의료는 “강의료지급에관한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⑦성과급, 기타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별도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외국인직원, 촉탁직원, 임시직원의 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⑨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중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⑩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고액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수의 계산방법) 보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월보수의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하고, 일당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 신규임용, 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일할계산한다.

3. 삭제

4. 보직 및 직책수당은 매월 15일이전에 발령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에게 지급한다.

5. 직원이 결근할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률을 체감할 수 있다.

- 가. 3일 내지 5일의 경우 2%
- 나. 6일 내지 9일의 경우 5%
- 다. 10일 이상의 경우 10%

6. 직원은 신상필벌원칙을 적용, 근무성적 및 공과를 감안하여 지급률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일)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1. 삭제
- 2. 삭제

제11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본 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기타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 5. 직무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경우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 8. 여직원이 영아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9. 개인사유로 본인이 휴직한 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교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 1. 6개월까지는 보수의 80%
- 2. 6개월 이후 1년까지는 보수의 50%

②형사기소 또는 징계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 되거나 또는 징계 의결요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기간중의 보수) 교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 1. 정직기간중의 보수는 미지급
- 2. 감봉기간중의 보수는 보수의 3분의 2

제14조(기타보수)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보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금피크 기간 중의 보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표 1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이행에 있어 기존규정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조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촉탁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촉탁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지급방법은 제4조제1호 단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9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교원인사규정」 제34조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를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라고 한다.

제3조(정지처분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